



국회 의원회관 518호

안철수 정치개혁 공약, <대한민국 정치혁명, 국민주권의 시대로!> 발표

-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해야
 -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해야
 -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해야
- 효율적인 정부·국회 운영 위해 제도개선해야

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3월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 <대한민국 정치혁명, 국민주권의 시대로!>를 발표하였다.

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0일 현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이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임을 언급하며,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정치권력을 사실상 정치인이 독점해 온 문제를 지적하고, 강력한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하였다.

이에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“정치혁명”의 4대 약속으로 △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, △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, △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, △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.

“대한민국 정치혁명, 국민주권의 시대로!”
-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, 안철수의 약속 -

약속 1.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

- ① 국민투표 범위 확대
- ② 국민발안제 도입
- ③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도입
- ④ 국민공천제 도입
- ⑤ 국민의 국회윤리위원회
- 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
- ⑦ 기소배심원제 도입

약속 2.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

- ① 일하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·행정부 견제기능 강화
- ② 사법부 독립성 강화
- ③ 지방분권 강화

약속 3.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

- 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
- ②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원선거 제도
- ③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
- ④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강화

약속 4.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

- ① 소통 강화를 통한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
- ②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

안철수 전 대표는 “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대표를 뽑기 위해 4년,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”고 하며, “촛불보다 투표가, 투표보다 제도가 힘이 센 만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.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자”고 밝혔다.

2017년 3월 15일

국민의당 안 철 수

<붙임 1> “대한민국 정치혁명, 국민주권의 시대로!” 주요 내용

“대한민국 정치혁명, 국민주권의 시대로!”
-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, 안철수의 약속 -

약속 1.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

① 국민투표 범위 확대

- 정치권에서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사항은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바꿀 수 있도록 국민투표의 실시 주체 및 범위 확대
- * (현행) 주체 : 대통령, 대상 : 외교·국방·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

② 국민발안제 도입

- 국민들이 직접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헌

③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도입

-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의 심사를 미루거나 게을리 하지 못하도록, 일정 수의 국민들이 청구하는 안전에 대해 심사기간 제한, 우선 심사하도록 제도개선

④ 국민공천제 도입

⑤ 국민의 국회윤리위원회

○ 국민에게 국회의원 윤리위 제소권 부여

-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원을 국민이 직접 윤리위원회에 제소 가능하게 하고, 국민의 제소가 있으면 반드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서 사전조사를 해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

○ 국회 윤리위 심사에 국민배심원제 도입

- 윤리위 제소 사건이 대부분 철회되거나 임기만료폐기되므로 윤리위가 실질적으로 국회의 윤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

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

⑦ 기소배심원제 도입

- 검찰이나 정치 관련 사건 등 소위 ‘권력형’ 사건의 경우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국민 배심원제 도입

약속 2.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

① 일하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·행정부 견제기능 강화

○ 대통령 인사권 축소

-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인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
- 개헌 전까지는 강제력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수용

○ 행정부의 법률안제출권 폐지

○ 예산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통제력 강화

○ 감사원의 국회 이관

- 회계감사 기능 중심으로 국회 이관 추진
- 국회가 효과적으로 대(對)행정부 감시활동을 할 수 있고,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음

○ 상시 국회, 상시 청문회,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헌법과 법률 정비

- 권위주의 시절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지 못하도록 정기회와 임시회 체제를 만든 것이 지금까지 유지됨. 개헌을 통해 1년을 한 회기로 하는 상시 국회로 전환
-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시청문회 제도 도입

② 사법부 독립성 강화

○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

-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 제고
- 대법관 스스로 대법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대법원 조직 내의 평등 문화 강화

○ 대법관 임기 연장

- 현행 임기 6년 →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여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 연장

③ 지방분권 강화

○ ‘자치단체’ 대신 ‘지방정부’ 로 헌법에 명시

○ 지방정부의 입법권·재정권 확대

-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
-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
-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

약속 3.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

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

- 현행 최다득표제는 찬성하는 유권자보다 반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당성이 약화됨
- 또한 대선기간에 정책보다는 이합집산과 같은 후보단일화가 중심이 됨으로써, 정당체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, 후보자들의 정책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
- 정치인들간의 이합집산이 아닌 국민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②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원선거 제도

○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

-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하에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하여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
- 따라서 국민의 뜻에 충실하고 공정한 의석 배분을 위해 전체 의석 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

확대,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비례성 보완

○ 국민이 직접 뽑는 비례대표(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)

- 정당의 공천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당투표 1표에 대하여 정당명부 내 후보에 대한 1표 추가 도입(지역구 1표까지, 1인 3표제로 개선)

○ 정치신인 활동 확대

-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전 1년부터 가능하도록
- 현역은 의정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를 만나고 자신의 업적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지만, 도전자는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선거경쟁이 될 수 있음

③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

○ 의원 수 중심 배분에서 정당득표율 중심 배분으로 전환 추진

-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(카르텔), 나머지에 대해 의석율, 득표율 등을 반영해 배분. 이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기존 정당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구조

④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강화

○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액을 인터넷으로 상시공개

- 누구의 돈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, 각 정치인이 누구를 대변하는지 유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함
- 특히 기부자의 고용주(소속 회사)를 공개함으로써, 편법적인 우회지원을 방지

○ 정치후원금 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공개

○ 정당회계 완전공개

○ 출판기념회 고가판매 금지

-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를 넘는 가격으로 책 판매하는 것을 금지
-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을 우회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장소로 변질
- 누가, 얼마의 돈을 내고 있는지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거액이 이해당사자들로

부터 기부될 가능성 있음

약속 4.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

① 소통 강화를 통한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

- 행정수도로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이전
 -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추구하고 동시에 지방균형 발전 추구
-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

②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

-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성 제거
 - 다당제 정착을 전제로, 단순과반제로 복귀
-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
-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화